

의안번호	제546호
의결 연월일	2017년 월 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7년 1월 6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46
----------	-----

제출연월일 : 2017년 1월 6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여성재단 출범에 따른 여성조직 개편과 충북 혁신도시 조성사업 마무리에 따른 직제 축소 등 기구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성조직 운영체계 개선 (안 제50조, 제51조, 제52조)
 - (여성발전센터 폐지) 조문 삭제
- 혁신도시관리본부 조직 축소 (안 제12조)
 - (직제 조정) 4급 본부장 → 5급 팀제(혁신도시지원팀)
 - (기구 조정) 균형건설국 균형발전과 내 혁신도시지원팀을 둬.
균형건설국 분장사무에 '혁신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2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혁신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제6절(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 제6절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분과위원회 설치 및 소관부서(제13조 관련)

명칭	소관부서	
	주관실국	부서
일반행정 분과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의회사무처,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리실, 행정국,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서울세종본부, 북부출장소, 남부출장소
복지여성 분과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보건복지국, 여성정책관
문화체육 분과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	문화체육관광국, 청남대관리사업소
경제환경 분과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경제통상국, 바이오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경제자유구역청
농정 분과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정국, 농업기술원,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농산사업소, 내수면연구소
안전건설 분과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재난안전실, 균형건설국, 소방본부, 각급 소방서, 도로관리사업소

* ()은 주무과

②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본문 중 ‘혁신도시관리본부’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균형건설국)균형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 략) <u><신 설></u> 12. ~ 23. (생 략)	제12조(균형건설국)----- -----. 1. ~ 11. (현행과 같음) <u>12. 혁신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13. ~ 24. (현행 12. ~ 23.과 같음)
제6절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제50조(설치) ① ~ ② (생 략) 제51조(소장) (생 략) 제52조(소관사무) 여성발전센터소장 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6. (생 략)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